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8
----------	-----

2023. 11. 27.(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 11월 20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의 종류와 그 지원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용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목적규정, 용어의 정의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종류, 지원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제6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인용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종합감사 지적 후 신속히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음

나. 일부 조문의 경우 인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범위를 벗어난 신설조항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9호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한다.
9.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4.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16.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17.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말한다.
18. “중소기업 정주여건 조성”이란 기업 근로자가 거주 및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

업창업 및 진흥기금의”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업진흥원”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금”을 “취급”으로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9. 중소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자금

제6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

6. 체인사업자

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11.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12. 벤처투자조합

13. 벤처투자모태조합

15.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제9조제1항제3호 중 “자금”을 “자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립자금”을 “건립자금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에 따라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한다.

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 8. (생략)

9.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하 “기업진흥원”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 13. (생략)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라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16.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5. ~ 8. (현행과 같음)

9.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 13. (현행과 같음)

14.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16.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
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17. “한국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
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
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신 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 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

4. (생 략)

②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 3. (생 략)

17.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
터)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말한
다.

18. “중소기업 정주여건 조성”
이란 기업 근로자가 거주 및 근
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
업 및 진흥기금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진흥원 지원자금

5. ~ 7. (생략)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

<신설>

③ (생략)

④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용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생략)

8. 기업진흥원

9. · 10. (생략)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5. ~ 7. (현행과 같음)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9. 중소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자금

③ (현행과 같음)

④ -----

----- 취급-----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

6. 체인사업자

7. (현행과 같음)

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9. · 10. (현행과 같음)

11.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신 설>

12. (생 략)

13.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14. 한국벤처투자조합

<신 설>

②·③ (생 략)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
의 신규구매 및 대체에 드는 자
금

4.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개
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
자금

5.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② ~ ⑩ (생 략)

12. 벤처투자조합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벤처투자모태조합

<삭 제>

15.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 자금 지
원사업

4. -----
----- 건립자금 지원
사업

5. ~ 7. (현행과 같음)

8.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
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
한 지원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산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과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업종별·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구역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립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육성계획은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도로·하천·철도·항만·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 계획 및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과 관련된 계획과의 조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육성계획의 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 간에 중복·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
약을 통한 지분 인수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전문개인투자자”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
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
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로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 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유한책

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48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4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4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벤처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카.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이해란